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User Recognition of the Copyright in Academic Libraries

유 양 근(Yang-Keun You)**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정보이용 형태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 |
| II. 저작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디지털정보의 이용형태에 따른 문제 |
| 1.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본질적 의의 | 2. 저작권 침해 행위 인식 조사분석 |
| 2. 저작권제도의 필요성 | 3.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도 |
| 3.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유형 |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정보유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되고 있어 교육적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쟁의 대상인 불법적 행위 발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문제 해결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조사하고 이중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복제 및 전송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ABSTRACT

Copyrights have threatened by some people even though information transfer methods are various and users can change information with others rapid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llegal actions against academic library users and to propose a solution to the copyright problem. Through understanding general concepts of copyrights and illegal cases against copyrights, collected essential cases were analysed. The results show that library users have copied and transferred illegally some materials with knowing unlawful actions.

Keywords: Copyright, Copyright Law, Infringement of Copyright

* 본 연구는 2006년도 강남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강남대학교 제 1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yyk4712@kangnam.ac.kr)

• 접수일: 2008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8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3월 21일

I. 서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다량으로 생성될 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가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집, 정리, 제공되는 정보유통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이용 방법이 편리해졌다. 이와 같은 정보유통 환경은 이용자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발전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중독, 각종 유해사이트의 범람,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등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는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저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복제, 전송으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교육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시대의 정보기반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적인 침해가 쉽게 발생되고, 이를 발견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회가 정보화로 발전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특히 디지털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발생률은 점점 증가할 수 있어 디지털정보를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심각성을 안고 있다. 개인의 정보기술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정보 유통은 제어장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저작권 문제는 대학생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사용자의 인식변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 방법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또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복제 행위가 저작권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불법적으로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고취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저작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학생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고 이중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적 사례를 질문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정도를 분석하였다. 1)

II. 저작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제작, 축적, 전달,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달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

1) 본 논문에서 사례로 제시된 저작권침해 관련 내용은 저작권침해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저자가 여러 가지 조사결과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만 선택하여 연구에 활용되었음을 밝혀둔다.

법 등 규제의 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는 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법의 경계점에서 저작물의 제작자, 전달자 및 이용자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적법성 또는 불법성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의 본질적 의의와 관련되는 저작권법과 저작권법의 필요성 및 저작물보호대상의 시각에서 저작물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본질적 의의

세계최초의 저작권법은 1710년에 발효된 영국의 앤 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이라 할 수 있다.²⁾ 미국은 1790에 최초의 연방저작권법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1871년에 저작권법을 갖기 시작하였다.³⁾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에 의해 저작권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고⁴⁾ 1986, 2006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 등 총 14회의 개정을 거칠 정도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21세기로 접어들며 전 세계가 지식기반 산업 사회, 디지털·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재편되어 가고,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UCC⁵⁾ 및 FTA 등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⁶⁾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개념은 2006년 12월 23일 법률 제8101호 전면개정 공포되고 2007년 6월 29일에 시행된 저작권법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⁷⁾⁸⁾⁹⁾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뜻한다.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¹⁰⁾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가 발생 할 때에는 위법으로 규정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 조치를 하게 되어있다.¹¹⁾ 이러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귀속주체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자 인격권을 보호함은 물론, 사용자의 권

2) 박성호, 저작권의 이론과 현실: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서울 : 현암사, 2006), pp.39-40.
 3) *Ibid.*, p.39.
 4) *Ibid.*, p.58.
 5) UCC(User Created Contents)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의 저작권 보호는 각 UCC의 특성에 따라 완전한 저작권의 부여부터 최대한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것까지 탄력적인 저작권의 적용이 요구된다.
 6) 문화관광부, 한국 저작권 50년사(서울 : 문화관광부, 2006), pp.5-7.
 7) 한국저작권법 제 1조(목적) 이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유네스코 편, 백승길 박진희 역,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서울 : 보성사, 1989), p.32.
 9) 김기태, "매체 환경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9집 (2001. 12), p.11.
 10) 저작권법 제 2 조(정의) 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항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말한다.
 11) 한승현, 정보화시대의 저작권(서울 : 나남, 1992), p.21.

리도 보호하는데 있다.¹²⁾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사용자 양쪽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중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률인 동시에, 문화 질서와 문화 진전을 좌우하는 문화 법규라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학문영역이든 예술 영역이든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창작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기준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⁴⁾ 이는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 자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의 저작물의 첫 번째 기준은 저작물의 독창성과 표현 형식이나 방법이 창작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¹⁵⁾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수단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표현되지 아니한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은 지적으로 창작된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¹⁶⁾ 사상, 학설,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제도의 필요성

저작권제도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데 우선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공중에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력과 비용은 이윤의 기대가 없이는 저작 활동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근대에 형성된 법적 개념이다. 저작권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저작권제도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¹⁷⁾ 저작권법은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보호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저작권법이라 한다.¹⁸⁾ 저작권 보호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견해와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를 권리로써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다.¹⁹⁾ 또한

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원의 개발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p.22.

13) 김성재, 출판의 이론과 실제(서울 : 일지사, 2006), pp.347-348.

14)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명시적으로 창작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창작성의 개념을 너그럽게 해석하는 반면, 독일 및 대륙법에서는 문학과 예술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성과 인격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15) 권영준, 저작권침해 판단론: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서울 : 박영사, 2007), p.19.

16) 정상조, 지적재산권법(서울 : 홍문사, 2004), pp.227-229.

17) 저작권법, 제 1조(목적).

18) 논리적으로 창작성은 저작권침해 소송의 처분제단계에서 문제된다. 만약원고의 작품에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침해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저작물상의 요건인 창작성과 저작권침해행위의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논리적 선후관계에 있다.

19) 최문기, 김연, 심재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부산 : 신지서원, 2007), p.234.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물의 강제이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저작권의 소멸 등 몇 가지 제한범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 공중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는 지식의 성과를 이용하려는 일반 공공의 필요와 저작자에게 보답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자극시키려는 당면한 필요성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²¹⁾ 이러한 시각에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체계의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며 이유를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²²⁾

가. 자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이유

저작자의 창작물은 어떤 형태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투자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자 회수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창작물은 저작자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결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침해로부터 저작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작물 보호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²³⁾

나. 경제적 관점에서 본 이유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쉽게 모방되고 침해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자 보호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않으며 사회적, 교육적 문제가 대두되며 창작활동을 기피하고 창작의욕이 상실되어 결국 국가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 할 때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비용의 보상과 합리적인 이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활동의 재투자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²⁴⁾ 더욱이 창작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저작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저작자에게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하며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 문화적 권리 유산의 관점에서 본 이유

문화는 물질적, 정신적 범주와 통털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 부터 문화가 형성되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저작권법 제1조 목적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20)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서울 : 세창출판사, 2003), pp.29-30.

21) *Ibid.*, pp.31-32

22) 이홍용, “저작권법의 주요내용과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45권, 제1호(2008), p.67.

23) 유대중,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소고,” 정보화정책, 제3권, 제2호(2006, 여름) pp.106-108.

24) 최문기, 김연, 심재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 p.6.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창작물은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인류문화의 소산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진보가 없는 물질적 진보는 기술지배의 위험상태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저작물은 국가 문화의 자산으로서 창작에 대한 저작자의 보호로 문화발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격려와 보상은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사회적 진보의 관점에서 본 이유

사회는 문화, 제도면에서 독창성을 지닌 공통의 이해에 기반한 개인의 집합이며 이러한 집합체를 결속 시키는 것도 사회적 진보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 저작물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계급·민족·연령간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결속을 가능케 하므로 저작자는 사회에 공헌한다 할 수 있다. 저작자의 사상이나 경험이 단시일 내에 많은 사람에게 배포되어 있다면 사회의 진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유형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무엇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는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로 되어있다.²⁵⁾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한다.²⁶⁾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법 제4조,²⁷⁾ 제5조,²⁸⁾ 제6조에²⁹⁾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다.

〈표 1〉에서 열거된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한 예시에 불과하다. 최근에 개발된 게임·홈페이지·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저작물도 보호받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저작물이든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자적 표현형식은 물론 비문자적 표현형식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와 자유로운 학술적 논의의 필요에서 개념, 이론, 학설, 공식 등의 내용은 보호대상

25) *Ibid.*, p.237.

26)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서울 : 현암사, 2006), p.64.

27) 저작권법 제 4 조 저작물의 예시.

28) 저작권법 제 5 조 2차적 저작물.

29) 저작권법 제 6 조 편집저작물.

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전자음악이나 컴퓨터음악 등과 같이 작곡가가 그러한 기계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저작물을 작성한 경과물도 보호요건을 구비한 것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다.³⁰⁾

〈표 1〉 저작물의 종류³¹⁾

범 주	예 시	비 고
어문저작물	시, 소설, 논문, 강연 등 문자화 또는 구술적인 저작물, 각본, 메뉴얼	저작권법적용
음악저작물	가요, 창극, 오페라, 기악, 관현악, 작사, 작곡, 편곡	저작권법적용
연극저작물	가요, 무용, 창극, 오페라 등 신체동작의 표현	저작권법적용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저작권법적용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설계도 및 모형	저작권법적용
사진저작물	작가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 초상사진, 예술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인물사진은 초상권
영상저작물	영화, 방송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영상물광고	저작권법적용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저작권법적용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지시 명령어의 집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적용
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각색, 시나리오, 영상저작물(디지털영상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법적용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웹디자인), 광고	저작권법적용

현행법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서 문화영역에 속하는 정신적 창작물과 정보기술을 규정하고 있다.³²⁾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제4조 제1호부터 제 9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향유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각 종류에 속하는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이란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³³⁾ 어문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강의, 설교, 축사 등 구술에 의한 저작물이 있다.³⁴⁾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만이 어문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

30) 서달주, 한국저작권법(서울 : 박문각, 2007), p.92.
 3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 2002, p.2 참고.
 32)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기술보호조치 등의 규정을 말함.
 33) 저작권법 제 4조 1항 1호.
 34) 구술저작물: 언어에 의한 것을 말하며 강연, 강의, 설교, 축사 들을 말한다.

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³⁵⁾

나.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즉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³⁶⁾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 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즉흥적인 연주나 가창과 같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³⁷⁾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포함된다.³⁸⁾ 연극의 각본 무용의 발레, 댄스, 무언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³⁹⁾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⁴⁰⁾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에는 그 저작물의 소유자가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것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들어 문제가 되는 것 중 캐릭터의 경우에는 미술저작물이 되고 만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문저작물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다.⁴¹⁾

문자저작물: 소설, 시, 논문, 동화, 수필, 교과서 등 일정한 글씨, 또는 기호형태로 나타내는 저작물을 말한다.

35)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서울 : 세창출판사, 2006) pp.402-403.

36) 저작권법 제 4조 1항 2호.

37) 무언극(無言劇):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 묵극(默劇), pantomime을 말함.

38) 저작권법 제 4조 1항 3호.

39) 무보(舞譜): 예술적인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을 말함.

40) 저작권법 제 4조 1항 4호.

4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p.404.

마.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⁴²⁾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건축물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은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모방건축에 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⁴³⁾

바.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해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하며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재현시킨 증면용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⁴⁴⁾ 다시 말하면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이며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사진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방법⁴⁵⁾으로 제작된 것을 사진저작물이라고 한다.⁴⁶⁾

사.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⁴⁷⁾ 통상적으로 영화, TV, 필름, 비디오테이프, LD, CD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음란비디오와 같은 불법영상저작물도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제3자가 무단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⁴⁸⁾

아.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이 개입된 형상 모형⁴⁹⁾에 의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⁵⁰⁾ 현행 저작권법은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평면이나 공간에 선이나 형태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미술저작물과 유사하나 학술적 내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2) 저작권법 제 4조 1항 5호.

43) 최문기, 김연, 심재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 pp.241-242.

44) *Ibid.*, p.242.

45) 유사한 제작방법이란 청사진, 전송사진, 사진적 판화 기타 인쇄물을 이용한 오프셋, 그라비아, 염색에 응용한 사진모양, 사진염색, 사진직물 등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말한다.

46) 저작권법 제 4조 6호.

47) 저작권법 제 2조 13호, 제 4 조 1항 7호.

48) 김수일, "저작권법상의 영상제작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25.

49) 형상모형: 입체적 지구모형, 인체모형, 동물모형 등을 말한다.

50) 저작권법 제 1조 4항 8호.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⁵¹⁾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포함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⁵²⁾

차.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새로운 창작물이 작성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을 파생저작물 또는 개작저작물로 표현되기도 한다.⁵³⁾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⁵⁴⁾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카.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이 경우, 편집물은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다.⁵⁶⁾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5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조 1호, 저작권법 제 4조 1항 9호.

52) 저작권법 제 4조 2항.

53)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p.86.

54) 저작권법 제 5조.

55) 저작권법 제 6조 1항.

56) 저작권법 제 6조 편집저작물: 1)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밖에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Ⅲ. 정보이용 행태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

1. 디지털정보의 이용형태에 따른 문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개인적 권리요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과 산업시스템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식, 정보는 확대 재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 최근들어 디지털정보의 저작권과 관련된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적재산권 충돌의 사례들은 개별 영역이나 사건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다.⁵⁷⁾ 이러한 문제는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 방식에 기반한 저작권법이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⁵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자의 이용형태가 저작권침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무분별하게 복제되거나 전송된다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그 배포를 방조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⁵⁹⁾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법 제1조⁶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저작자이다. 저작자에게 주어진 보다 실질적인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⁶¹⁾

57) 디지털환경에서 사회에서 상반된 의견 대립으로 일어난 사건이 '소리바다' 이다.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소리바다와 비슷한 인터넷 음악과일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재판부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콘텐츠의 수용이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 결과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번 판결만으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결론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오프라인에 기반한 저작권법이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저작물을 수용하는 환경에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58) <http://www.reportworld.co.kr/static/463/F462611.html>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판례 2007. 8. 23. 참고

59)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제26조.

60) 저작권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1)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5절 저작재산권(일부개정 2003. 5. 27. 법률 제06881호)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의 2(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다. 이와 같은 7가지 종류의 저작권재산권이 저작권자가 전유하는 배타적 지배권이며, 그러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에 한하여 인정된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저작물의 형태가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복제물의 형태도 바뀌었다. 디지털 복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복제를 하더라도 원본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과 보관이 쉽고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전송이 자유로우며 디지털 복제물은 완벽한 원본이 되며 또 하나의 완벽한 복제물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 디지털 복제에 대한 저작권 문제

디지털 복제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다. 디지털 복제에 대한 문제는 일시적 복제와 영구적 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구적 복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시적 복제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은 복제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⁶²⁾ 일시적 복제는 로컬 시스템의 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메모리로 불러들일 때 일어나는 복제와 원격 컴퓨터에서 전송된 정보를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멀티미디어 복제에 관한 저작권문제

최근들어 멀티미디어 저작도구⁶³⁾가 발전되어 편리하게 멀티미디어 자료가 제작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해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제작·배포·이용된다는 것은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종종 발생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이용형태는 멀티미디어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이용자들이 특정 정보를 책이나 프린트에 의해 출력된 유형물로

62)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 램(RAM)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63)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과 다른 미디어들을 결합할 수 있게 해주고 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하여 상호 대화적인 기능 추가 하므로서 월드와이드웹, 애니메이션, 프리젠테이션, CD -Title에서 상호 대화형으로 멀티미디어 구성 요소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다 멀티미디어 타이틀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저작도구(Authoring Tool)라 하며,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디렉터, 툴북, 오소웨어, 각테일, 새빛, 슈퍼매직, 포토뱅크 등이 있다.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멀티미디어의 이용 또는 무형적인 복제⁶⁴⁾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⁶⁵⁾ 유럽공동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행위도 불법복제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적법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행위를 허락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만 해도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취급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로부터 프린트해 내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시키는 행위를 복제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제작업자들은 최종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소한 저작권침해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단지 최종 이용자의 계약유효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겠다.

다. 디지털정보의 전송에 관한 저작권문제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⁶⁶⁾ 디지털환경은 지식정보사회를 가속화시키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분량의 정보들을 매우 손쉽게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환경은 창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어왔고, 디지털 네트워크의 실현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뿐 아니라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으로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유통과 이용의 장을 열어주었다. 전송권은 1998년 12월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이미 도입된 권리로서 저작권법보다 먼저 규정 하였다. 기존의 복제권이나 배포권 또는 방송권을 컴퓨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에도 새로이 도입한 권리이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전송은 일시적 송신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에 비하여 그 개념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전송은 기존의 공연, 방송, 배포의 개념과 비교하여 각각 개별성, 일시성 및 쌍방향, 무형성을 특징으로 한다.⁶⁷⁾ 이러한 전달 형태는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정보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에서 전송권을 도입하였다. 도서관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한 서비스 과정에 적용해 볼 때, 디지털 저작물을 특정의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경우, 무선 혹은 유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도서관 혹은 개별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전송이

64)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65) 정보산업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따른 이러한 무형적 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우선 유럽공동체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위원회 지침'에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복제권의 내용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거나 보거나 입력 또는 저장시키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복제행위로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6) 저작권법 제 2조 9 항 2호(전송)

6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제6판)(서울 : 세창출판사), 2004, pp.10-12.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 행위 인식 조사분석

가. 조사방법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와 관계없이 저작권침해 행위를 무분별하게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인식부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제재조치에 대한 무감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 사례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조사하였다.

(1) 제 1 단계: 표본조사

K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실제로 저작권침해 또는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침해행위사례를 면접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 제 2 단계: 인터넷 자료 중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침해행위사례를 조사하였다.

(3) 제 3 단계: 인식도 조사분석

1,2 단계를 통하여 수집된 24개 <표 2>의 사례들 중 상위 9가지 사례를 선택 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지를 수집 하여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도 정도를 분석하였다.

나. 저작권 침해행위사례

저작권침해의 의미는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⁶⁸⁾⁶⁹⁾ 학생들이 주로 행하는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내용 중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68) 최문기, 김연, 심재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 pp.280-282.

69) 저작권자는 민사상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123조, 제125조, 제127조) 또한 민사적인 책임뿐만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지을 수 있다.

〈표 2〉 저작권침해 행위 사례

사례	저작권 침해행위	지속되는 저작권법	적용죄
1	복사가기에 위탁하여 책을 복사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	저작권법 제138조	출처명시 위반
3	저작자 불득 자료를 공개 게재	저작권법 제30조	자료공개
4	저작자 출판물을 재타이핑 한 후, 인터넷에 게시	저작권법 제13조	무단게재
5	인터넷게재 사진을 수정 변경 후, 공모전에 제출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동일성 유지권 위배
6	사진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한 행위	저작권법 제20조	사전허락 불이행 배포권 침해
7	음악파일의 주소 혹은 소스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링크할 수 있도록 올린 경우	저작권법 제81조	전송권 침해
8	e-mail 혹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레포트를 전송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 전송의 중단에 의하여 삭제해야 함.
9	P2P 방식을 통하여 파일을 교환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 전송의 중단에 의하여 삭제해야 함.
10	책의 사진 및 표를 스캔하여 그대로 사용한 경우 혹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저작권법 제13조	부정발행 동일성 유지권 훼손
11	콘서트 영상을 직접 찍어 미니홈피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37조	권리의 침해 부정발행
12	P2P 방식을 통하여 파일을 교환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무단복제 전송
13	책의 사진 및 표를 스캔하여 그대로 사용한 경우 혹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37조 저작권법 제13조	권리의 침해부정발행 동일성 유지권 침해
14	인터넷 상에 올려진 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37조	권리 침해 부정발행
15	인터넷에서 허락 없이 복사, 자기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린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침해
16	저작권침해 방지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 타인과 공유한 경우 외국방송사에서 제작한 TV 드라마를 복제 후, 인터넷에서 공유한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 및 삭제
17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여 여러 사람이 제본한 경우	저작권법 제63조	출판권 양도·제한
18	저작권법 개정 전에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려놓은 음악 파일	저작권법 제64조 저작권법 제69조	복제권침해
19	음악 파일을 인터넷방송(웹 캐스팅)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	저작권법 제64조 저작권법 제74조	전송권침해
20	좋은 글귀나 시구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법 제4조 저작권법 제10조	무단복제 복제권침해 저작권권리침해
21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올리는 행위	저작권법 제64조	복제권침해 불법행위
22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	저작권법 제64조	복제권침해 불법행위
23	MP3를 다른 파일로 변환하여 올리는 행위	저작권법 제20조	동일성유지 침해
24	저작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법 제64조	전송권침해 불법

〈표 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저작권법과 관련되는 불법행위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침해사례 불법행위 분석

〈표 2〉에서 나타난 사례 중 자주 발생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사가게에 위탁하여 책을 복사한 사례

이 행위는 복제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된다. 복제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사적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대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⁷⁰⁾

(2)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사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는 인용인지의 여부는 그 목적이나 관행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행위는 책자의 제호와 출판사 등을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학생의 행위는 잘못이다. 출처 명시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으로 형사상의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3) 타인에게 부탁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제출한 사례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4) 스터디 그룹 자료실에 출처 및 자료제공자 측의 양해를 받지 않은 채 자료를 게재한 사례

학원에서 출판을 통하여 출판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들이 자체 학원에서 제작한 것이고 이것이 유포됨으로 인하여 학원 학생들의 퇴원이나 항의가 많아지고 있어 저작권자인 학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항목에 의하여 학원에서는 저작권법의 위반을 들어 소송을 할 수 있다.

70) 복제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오늘날, 위법이라 해서 이들의 행위를 일일이 적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타협책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가 복제보상금제도이다.

(5) 타인이 발행한 출판물을 재타이핑 한 후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책의 내용을 인터넷 상에 게재했으므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6)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수정 변경하여 공모전에 제출한 사례

네트워크상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스캐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에 해당된다. 동일성 유지권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목적이나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칼라사진을 흑백으로 바꾸고 그 위에 덧칠을 하였다면 이것은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 저작권법 제124조를 보면 침해로 보는 행위가 규정되어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가능하다.

(7) 사진 자료 등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인터넷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한 사례

자신이 콘텐츠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중 전송권 71) 침해행위가 된다.

(8) 저작권법 개정 전에 홈페이지, 카페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은 사례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을 부여받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린 것은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 할 수 있다.

71) 전송권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그들의 실연 또는 음반(이하 '음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MP3를 다른 파일(asf, wma, avi, wav 등)로 변환하여 올린 사례
음악 파일의 확장자명에 관계없이 음악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10) 대중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올린 사례
모든 음악은 장르 구분 없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대중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불법 행위이다.

(11) 음악 파일을 인터넷방송(웹 캐스팅)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한 사례
이용 방식에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다. 즉, 음악 파일을 웹 캐스팅의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12) 음악 파일이 아닌 좋은 글귀나 시구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웹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린 사례
글귀나 시구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자도 전송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글귀나 시구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이다.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또는 신탁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⁷²⁾

(13) 신문기사 복사 사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은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관련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표 2> 9가지를 선택하여 100명에게 질문내용을 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여 72명(72%)이 응답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72)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한 때에는 당해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음악과 관계있는 신탁관리단체로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다.

〈표 3〉 인식도분포현황

(단위: 명, %)

사례	불법행위사례내용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르겠다	
1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여 여러 사람이 제본한 경우	69	95.83	1	1.38	2	2.77
2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린 경우	66	91.63	3	4.16	3	4.16
3	스터디 그룹 자료실에 출처 및 자료제공자 측의 양해를 받지 않은 채 자료를 게재한 경우	69	95.83	2	2.77	1	1.38
4	타인이 발행한 출판물을 재타이핑 한 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71	98.61	1	1.38	0	0
5	대중가요가 아닌 클래식, 음악, 민요, 국악, 판소리 등을 올린 경우	60	83.33	7	9.72	5	6.94
6	음악 파일이 아닌 좋은 글귀나 시구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린 경우	59	81.94	8	11.11	5	6.94
7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을 홈페이지에 올려 사용한 경우	55	76.38	9	12.5	8	11.11
8	신문기사복사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	55	76.38	11	15.27	6	8.33
9	사진 자료 등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인터넷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한 사례	58	80.55	9	12.5	5	6.94

* 각 사례별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적인 현황만 분석하였음.

〈표 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체로 55%~71%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인식도는 대단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8%~15.27%에 범위로 나타나 작게는 1.38%, 크게는 15.27%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가 0%~11.11%에 작게는 0%, 크게는 11.11%로 나타나 사례내용에 따라 인식도가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분석한 결과로 보아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인식도는 높은편은 아니며 특히 디지털자료와 관련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례가 다른 사례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저작권제도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데 우선하고 최종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저작권보호정책은 지식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아직도 무분별하게 저작권침해 행위를 범하는 상황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

는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적제재 조치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실제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둘째,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도가 다른 저작권 침해행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조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문제의 심각성은 학생들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인지하면서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저작자의 의욕이 저하되어 창작활동이 줄어들고 지적재산권의 유통도 순조롭지 않아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지식산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보호정책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며 사회적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디지털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될수록 저작권 침해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아 저작권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저작권침해행위방지 방안으로 대학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며 디지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기태. “매체환경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9집(2002).
김세훈. 지역지식정보서비스활성화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김윤명, 정준민.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저작권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2002).

-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서울 : 박영사, 2007.
- 박원경. “정보관리자를 위한 콘텐츠 보호 및 제한법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2권, 제2호(2001).
-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서울 : 현암사, 2006.
- 박세일. 법경제학(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4.
- 손정달, 강기봉.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7.
- 오승중. 저작권법, 서울 : 박영사, 2005.
- 오승중 · 이해완 공저. 저작권법(제4판), 서울 : 박영사, 2005.
- 윤선영. “도서관정보전문직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33권, 제3호(2002).
- 이공례 외.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혁신 특성과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 이종문.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보호 환경 평가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2002).
- 이홍용. “저작권법의 주요내용과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45권 제1호(2008).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서울 : 홍문사, 2004.
- 정상조. “멀티미디어 관련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저작권논문선집(II),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1995.
- 최문기, 김연, 심재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 부산 : 신지서원, 200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자원의 개발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보 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서울 : 박문각, 2007.
- 한승현.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서울 : 나남출판, 1996.
-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해설, 서울 : 저작권아카데미, 2006.
- 홍지현.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제1호(1999).
- 홍재현, 이두영.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국제 동향,”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1권 제1호(1999).

